

# 영암읍 종합감사 결과

I.

## 감사개요

### 1. 감사배경 및 목적

-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개선토록 하여 군민 불편 해소
- 수입, 지출, 재정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방만하고 낭비적인 재정운영 관행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 및 예산절감 유도
- 복지대상 관리 및 자원배분 실태 점검으로 중복·누락·편중 지원을 방지하여 역차별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로 군민행복 실현

### 2.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영암읍
- 감사기간 : 2019. 06. 10. ~ 06. 13. (4일간)
- 대상기간 : 2017. 06. 27. ~ 2019. 06. 09. (2개년)
- 감사자 : 기획감사실장 외 6인

### 3. 감사중점사항

- 공사·구매 계약체결 및 대가 지급의 적정성
- 기획, 총무행정, 문화·관광 등 일반행정 추진사항
- 농정업무, 지역경제 업무 및 산불예방 대책 추진사항
- 복지행정 추진실태 및 관리의 적정성
- 소규모사업 및 각종 공사 시공의 적정성 여부
- 생활민원 및 각종 민원처리 실태 확인
- 각종 세금 과세자료 누락여부 확인 등

#### 4. 주요위반사항 요약

분야별	제 목	주요위반사항
세출분야	이장 월정수당 지급일 지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암읍에서는 2017. 9. ~ 2018. 9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이장 월정수당 지급을 1일~ 5일 까지 지연 지급하여 지출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영암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9조】</li> </ul>
	특근매식비 현금영수증 미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암읍에서는 상기 “특근매식비 신용카드 지출현황”과 같이 2018년 2건 851,000원, 2019년 1건 272,000원 총 3건 1,123,000원의 특근매식비를 집행하면서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세출 예산 집행기준 적용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li> </ul>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5호, 2016.2.20. 시행)/행정안전부 예규 제20호, 2018.1.1. 시행)에 따르면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203-02)는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서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 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 연간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li> <li>2017년, 2018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203-02)를 집행하면서 연간 집행 계획서 없이 직원 생일 축하 상품권 등 구입 경비로 지출한 사실이 있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5호),(행정안전부 예규 제20호)】</li> </ul>
	수입인지 징구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암읍에서는 2017년 물품구매 1건, 2018년 공사 1건에 대해 수입인지 40,000원을 미징구한 사실이 있음. 【인지세법 제3조 및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li> </ul>

분야별	제 목	주요위반사항
세무분야	주민세(재산분, 법인균등분) 과세자료 관리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암군사무분장규정 등에 의거 읍·면에서는 과세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세원이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미납부한 12개 사업장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조사하지 않고, 군에 부과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주민세(재산분, 법인균등분) 19건 3,192,000원을 누락하여 과세대상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음.  <small>【영암군 사무분장규정 및 재무과-17356(2018.7.3.)호】</small> </li> </ul>
	취득세(가설건축물) 신고·납부 미확인 및 과세자료 누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세법 제20조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의 경우 6개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영암군사무분장규정」 등에 의거 납세의무자가 과세물건을 취득하면 신고·납부 안내하고, 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면 취득세 과세자료를 군에 제출하여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small>【지방세법 제20조】</small> </li> </ul>
사회복지 분야	민간자원연계 지원 대상자 선정 관리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복지공동모금회 민간자원 연계 지원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80%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소득·재산 등 기초자료를 근거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나,</li> <li>2018년도 선정 현황을 확인하면, 지원대상자 총 93명 중 4명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80%를 초과하거나 기초자료 없이 선정 함으로써 민간자원 연계 지원 대상자 선정 관리를 미흡하게 하였음</li> </ul> <p><small>【주민복지실-443(2018.1.4.)호】</small></p>

분야별	제 목	주요위반사항
사회복지 분야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사업 지도감독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8. 3/4분기 사업보고서를 확인하면, 출석부와 보고서의 무료급식인원이 서로 다르고, 급식명단에 왕인대학 급식자가 포함되었으며 결식 우려가 확인되지 않은 노인이 출석한 것으로 정리되었을 뿐 아니라, 회계장부(현금출납부) 또한 출납일자와 구입일, 영수일, 지출일, 결제일 등이 각각 다르게 기록되어 무료급식 지원 사업의 지도·감독을 미흡하게 한 사실이 있음 【주민복지실-4150(2018.1.26.)호】</li> </ul>
농업분야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검토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첨부서류는 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임대·사용대차일 경우), 농지취득인정서,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서류 등 첨부하여야 함에도</li> <li>영암읍에서는 2017~2018년도에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서 접수시 부동산 매매 계약서 9건, 토지대장 3건, 농지원부 1건에 대하여 불필요한 서류를 첨부 한 사실이 있음. 【농지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7조 제2항】</li> </ul>
	2018년 인력절감형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사후 관리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각종 농업지원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 후 사후관리 기간(5년)중 보조금으로 지원된 시설물, 농기계장비 등이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사후관리대장 비치 및 년 1회 이상 활용사항을 점검하고, 각종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함에도,</li> <li>영암읍에서는 '18년 지원된 인력절감형 농기계 구입지원사업에 대해 당해 년도 이후 '18년 ~ '19년 6월 현재까지 지원사항에 대해 점검관리를 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친환경 농업과-981(2018.1.17.)호】</li> </ul>

분야별	제 목	주요위반사항
건설·도시 분야	설계예산서 작성시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예정 가격의 작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시에는 공사의 종류, 규모, 기간에 따라 간접 노무비, 산재, 고용, 건강, 고용, 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등을 반영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하며, 각종 경비 및 보험료는 관련법 및 중앙부처의 고시의 기준에 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li> <li>영암읍에서는 「영암 개신리 농경지 정비 공사」를 설계 및 시행하면서 공사기간 1개월이상인 모든 공사에 반영하여야 하는 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반영하지 않고 설계, 계약 및 발주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small>【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small> </li> </ul>
	소규모사업 준공처리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계서를 작성시 관급자재 납품 후 현장에서 자재등을 사용하기 위해 소운반이 필요한 경우 운반하는 비용을 설계에 반영하고 있다.</li> <li>그러나, 영암읍에서는 「영암 춘양리 용수로 설치공사」 외 3건을 시행하면서 대형차량의 진입이 가능하여 수로관 하차 후 바로 사용할 수 있거나, 레미콘 차량이 진입하여 바로 타설이 가능한 현장여건에서 소운반이 반영되어 설계된 것을 감독자 및 시공사는 확인하지 않고 준공 처리 되었습니다.</li> <li>따라서 공사감독은 준공전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나,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당초 계약 금액대로 집행하여 제작비를 포함한 총 금액 767천원의 사업비를 과다하게 집행하였습니다.  <small>【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 제2항 및 공사감독자 업무지침】</small> </li> </ul>

분야별	제 목	주요 위반사항
건설·도시 분야	소규모 주민편의사업 추진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2항(건설공사 감독자의 의무) 및 「공사감독자 업무지침」에 의하면 공사감독 공무원은 감독업무 수행시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시방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설계도서와 시공 상태가 일치하게 시공되도록 공사 감독을 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의 설계변경의 사유에 해당되는 사업계획 및 위치의 변경, 수량의 증감, 공법 변경시 변경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li> <li>● 영암읍에서는 「영암읍 한대리마을 아스콘 포장공사」를 시행하면서 안전건설과에서 추진중인 「재해위험 노후교량(한대교) 재설치공사」와 사업구간이 중복되어 설계시 계획한 노선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사업노선이 일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계약 없이 사업을 준공처리하였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 제2항 및 공사감독자 업무지침】</li> </ul>